

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신청하세요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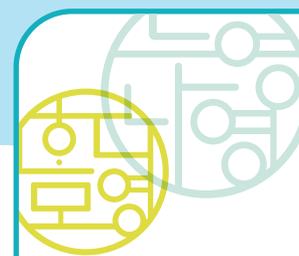
문의처

제주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 ☎ 064-710-3154

제주시청 농정과 ☎ 064-728-3093

서귀포시청 감귤농정과 ☎ 064-760-2872

관할 읍·면사무소 산업팀



안전인증지정 업체

1. 농어촌민박 안전인증 지정을 받으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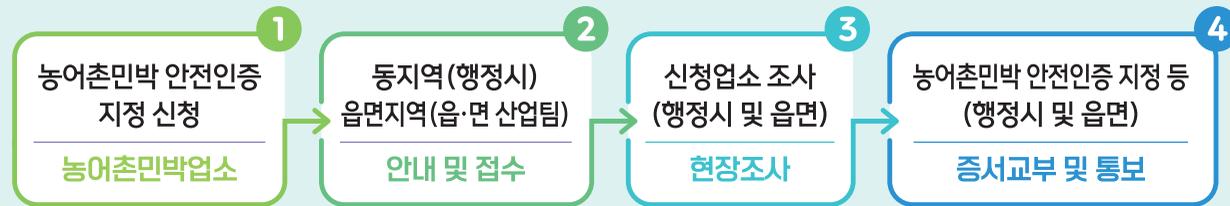
- ✓ 농어촌민박 이용객의 안전 불안감 해소 및 민박경쟁력 UP!!
- ✓ 믿을 수 있는 농어촌민박 운영으로 제주 이미지 상승 효과
- ✓ 농어촌민박 지도 및 체계적 관리 효과가 있습니다.



2. 안전인증제 신청을 하려면

- ✓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하고 6개월 이상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중 동지역(행정시 (감귤)농정과), 읍·면사무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

농어촌민박 안전인증 지정 절차



3. 안전인증 지정 및 관리체계

- ✓ 지정주체 : 행정시장, 읍·면장
- ✓ 지정기간 : 지정일로부터 2년간 (※ 기간 경과 시, 재신청)
- ✓ 지정대상 : 농어촌민박 안전인증 지정요건 5개 분야* 평가결과 총점 85점 이상 (*5개 분야 : 기본시설, 시설 및 안전관리, 범죄예방, 법규준수, 위생관리)



4. 안전인증 지정업소 지원혜택은?

- ✓ 관광진흥기금(운영자금) 40백만 원까지 저리 용자 지원
- ✓ 농어촌진흥기금(개보수자금) 20백만 원까지 저리 용자 지원
- ✓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(비짓제주)를 통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 홍보 지원



5. 안전인증제 취소 사유

- ✓ 농어촌민박사업 신고자가 실거주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
- ✓ 농어촌민박 서비스·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경우
- ✓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사업장
- ✓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



6. 안전인증제 관련



Q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신청 시 CCTV 설치는 필수조건인가요?

A 농어촌민박 이용객의 안전 불안감 해소를 위해 CCTV 설치는 필수조건입니다. 농어촌민박을 1년 이상 운영하는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, “농어촌민박사업장 CCTV설치비”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


신청방법 : (감귤)농정과 또는 민박소재지 읍·면사무소
지원내용 : 개소당 1,600천 원(보조 50%, 자부담 50%)까지 지원

